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박 덕 영*

■ 목 차 ■

I. 서 론

II.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1. 서
2. 내부적 규제
3. 공공적 규제
4. 저작권심판소를 통한 규제
5. MMC를 통한 규제
6. 영국 CDPA상의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규정

III.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실태

1. 개별적 집중관리단체 개요
2. DPRS 및 Compact Collections Limited

IV. 결 론

I. 서 론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용자는 일일이 각 곡들의 작곡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이 겪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조차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일련의 저작권 활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네트워크 및 디지털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기기를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현재의 환경에서는 더욱 이들 저작권을 위탁받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¹⁾

최초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1852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SACEM(Society of Authors, Composers and Music Publishers)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영국에서의 최초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Mecolico(Mechanical Copyright Licenses Company Limited)와 PRS(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이다.²⁾ Mecolico는 1911년 법 당시에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울러 PRS는 1914년 당시 주로 인쇄물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작곡가 등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각 저작권분야별로 구성된 10여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그 독점적 지위에 따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³⁾ 영국은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Statute of Anne, 1710년)을 제정한 국가로서, 현재는 여러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포괄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1988년 제정된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⁴⁾을 통해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아래에서 영국에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여러 규제 수단들을 CDPA 1988 등 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별적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용실태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1. 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그 성질상 일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대부분의 저작권자

1) 우리 저작권법은 제78조 이하에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을 포함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감독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Copinger and Skone James on Copyright*, 14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99), pp. 1496-1497.

3) 유럽에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적 규율 전반에 대하여는, Adolf Diets, “Legal Regula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Law)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Summer, 2002 참조.

4) 일반적으로 “CDPA 1988” 이라 불린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약칭한다.

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된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존재가 이용자들의 저작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므로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공익의 유지를 위해 각국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⁵⁾

첫째, 당해 단체의 회원들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통제가 있다.

둘째, CDPA 1988의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규정에 따른 규제가 있다. 이에는 각종 저작권 관련 조약에 따른 국제적 의무도 포함된다.

셋째,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의한 통제가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운영·관리하는 라이선스의 조건 및 라이선싱 정책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라이선시에 의한 검토, 확인 또는 변경을 위해 저작권심판소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는 1973년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제78조(1)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의 관행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독점 및 합병 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⁶⁾ 이러한 권한은 최근에 일부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⁷⁾ 행사된 바 있다.

아래에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 각각에 대하여 상술하고, 이와 관련된 CDPA 1988상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⁸⁾

2. 내부적 규제

(1) 회원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사실상의(de facto) 독점적 지위의 효과

집중관리단체는 단체의 회원인 권리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권리자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권리의 관리를 각각의 저작물 유형을 대표

⁵⁾ Emily Lui, "The Eurovision Song Contest : a Proposal for Reconciling the National Regulation of Music Collecting Societies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Ent. L. R.* 2003, 14(4), pp. 74-75.; Copinger and Skone James, *ibid*, pp. 1511-1517 참조.

⁶⁾ CDPA 1988 제144조.

⁷⁾ PPL 및 PRS

⁸⁾ 영국에서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여러 통제 수단에 대하여는 Copinger and Skone James, *ibid*, pp. 1511-1517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하는 특정한 집중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하는지의 여부를 정부가 감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나, 영국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정부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입법적 규정 등은 없다. 다만 집중관리단체는 회사이므로, 그 구성원에 의해 설립되고 통제되며 영국 회사법의 요건에 따를 뿐이다.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 권리자는 당해 집중관리단체의 정관(constitutions)의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가 관리되는 방식 및 집중관리단체의 운영방식을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권리자들은 당해 집중관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EU법에 따르면, 회원들은 권리의 관리를 스스로 하든지 또는 그들을 대표하여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⁹⁾

또한 회원가입의 조건과 관련한 결정,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을 모니터(monitor)하여 보상금을 징수 · 분배하는 방법과 규칙은 그 집중관리단체가 대표하는 개별 권리자들의 의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회원들은 또한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관리비용이 합리적인지, 보상금의 분배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정책이 잘못 이행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회원들이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appeal procedures)를 두어야 한다. 끝으로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요금을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이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장려 등과 같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결정들은 회원들의 명시적 승인을 요한다.

(2) “독점 및 합병위원회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의 권고

집중관리단체가 회원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최근 PRS의 관행과 관련하여 독점 및 합병위원회(MMC)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1994년에 PRS가 일부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MMC에 접수된 것이다. 이 민원은 “보다 덜 대중적인(less popular)” 형태의 작곡가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집중관리단체가 채택한 보상금 정책이 부당하게 “보다 더 대중적인(more popular)” 형태의 작곡가 및 발행자들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비판은 또한 집중관리단체에서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는 일부 회원들로부터도

⁹⁾ GEMA (No.1) [1971] O.J. L134; [1971] C.M.L.R. D35.

제기되었다. 실연권을 집중관리단체로 양도하는 규정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집중관리단체를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적용되는 제한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편,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비용의 과다지출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고 한다.¹⁰⁾

1995년 11월 위원회는 PRS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집중관리단체의 관리 관행에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결론적으로 PRS가 그 회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집중관리단체가 회원들에 대한 책임, 서비스의 정책과 절차 및 제한, 비용 배분의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의 정책결정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단체로의 상호 보조금(cross-subsidies)에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입시에 충분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위원회는 집중관리단체 내에서의 회원 지위 강화를 위한 일련의 권고(recommendations)를 하였다. 이에는 예를 들어, 단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위원회(Appeal Board)를 설립하라는 것과, 정책이나 전략의 변경시 이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문 절차를 도입하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PRS의 규약(Article of Association)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되었다. 한편 위원회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이와 같은 권고들은 장래에 영국의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공공적 규제

(1) 공공이익을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공적 규제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저작권을 라이선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집중관리단체가 가진 독점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책정할 수 있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 이 고통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규제를 위한 수단과 절차들이 요구되고 있다.

¹⁰⁾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Performing Rights: A report on the supply in the United Kingdom of the service of administering performing rights and film synchronisation rights*, London, HMSO Cm. 3147, paras 2.2 and 2.3.

(2) 1956년 법 이전의 상황

1956년 법 이전에는 당시 운영되던 4개의 집중관리단체(PRS, MCPS, PPL, Sound Film Music Bureau)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PRS와 PPL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각 음악저작물 및 음반에 있어서의 실연권을 관리하였으며, 다른 두 단체는 음악을 녹음할 권리의 실행과 관련된 단체이다.

(3) 베른협약(브뤼셀)

연극저작물, 연극-음악 또는 음악저작물의 공연과 송신에 대해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공식적으로 1948년의 브뤼셀 회의에서 베른협약 제11조로 확립되었다. 당시에 영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

“영국 대표단은 영국정부가 공공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영국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독점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자유롭게 유보된다는 이해 아래, 협약 제11조의 규정을 수용한다.”¹¹⁾

이와 같은 선언의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부과하는 요율을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의 잠재적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상설재판소(Standing Tribunal)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결국 입법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1956년 법 제23조 내지 제3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4) 실연권심판소 (Performing Right Tribunal)

1956년 법 제23조는 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실연권심판소(PRT)를 규정하였다. PRT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첫째는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라이선스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라이선스 정책을 운영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개인에게 정책에 따른 라이선스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등의 청원을 다루는 것이다.

4. 저작권심판소를 통한 규제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는 1990년 방송법에 의해 개정된 1988년 법에서 여러 새로운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관할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집

11) Records of the Brussels Conference, 5-26 June 1948, (Copinger and Skone James, ibid, p.1515에서 재인용)

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 요강(scheme)과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제들은 저작권심판소의 관할범위에 포함된다. 즉, 제안된 라이선싱 요강 또는 현재의 라이선싱 요강(CDPA 1988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라이선싱 요강에 따른 라이선스의 부여(동법 제121조, 제122조), 라이선싱 기관에 의한 라이선싱(동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복제와 관련한 라이선싱 요강 또는 라이선스의 범위(동법 제139조), 독점 및 합병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조건(동법 제144조 제4항) 등이 저작권심판소의 관할범위가 된다. CDPA 1988상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에서 상술한다.¹²⁾

5. MMC를 통한 규제

독점 및 합병위원회(MMC)는 1973년 공정거래법 부칙 제8조 제1편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해 라이선시의 저작물 이용이나 저작권자의 다른 라이선스를 승인할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 또는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조건에의 라이선스 승인을 거부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운영되거나 운영될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144조).¹³⁾

6. 영국 CDPA상의 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규정

영국 CDPA 1988는 제7장에서 저작권 라이선싱을 규정하면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 라이선싱 · 라이선싱 요강 · 라이선싱 기관 등을 정의하고, 라이선싱 요강과 이에 따른 라이선스의 저작권심판소를 통한 규제 등을 차례대로 규정한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1) 정의

CDPA 1988상 '라이선싱 기관'은 저작권자나 장래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라이선싱을 교섭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의 하

¹²⁾ 한편, 저작권심판소가 라이선스에 대하여 가진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요강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할 수 없다. 둘째, 회원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관여할 수 없다. 셋째, 영국내 라이선스에만 적용될 수 있다. (Emily Lui, *ibid.*, p. 76)

¹³⁾ 이에 따른 위원회의 보고서의 예는,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Collective Licensing, A report on certain practices on the Collective Licensing of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rights on Sound Recordings*, Cm.530 HMSO (1988);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Performing Right-A report on the supply in the United Kingdom of the services of administering performing rights and film synchronisation rights*, Cm.3147. London, HMSO (1996). 참조.

나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하며, 다수 저작자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허락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CDPA 1988 제116조 제2항).

(2) 라이선싱 요강(licensing scheme)

라이선싱 기관이 운영하도록 제안된 라이선싱 요강의 조건은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심판소는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회부된 사항의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운영중인 라이선싱 요강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저작권심판소는 분쟁사항에 대한 심리를 통해 요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동법 제118조 - 제119조).

라이선싱 요강의 운영자가 그 요강에 따라 허락하기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심판소에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라이선싱 요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권심판소에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121조).

(3) 라이선싱(licensing)

라이선싱 기관이 라이선시의 승인을 위하여 제안한 조건은 장래의 라이선시에 의해서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심판소는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제안된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만기가 된 라이선스에 대해서 라이선시는 그 만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저작권심판소는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라이선시가 라이선스의 이익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동법 제129조).

(4) 일반적인 고려사항

라이선싱 요강 또는 라이선싱에 관한 회부나 신청에 있어서 저작권심판소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요강의 이용가능성,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라이선스의 부여 및 그러한 요강 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회부 또는 신청과 관련된 요강 또는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시와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요강에 따른 라이선시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동법 1988 제129조)

III. 집중관리단체의 운영실태

1. 개별적 집중관리단체 개요

영국에서의 개별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및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ALCS(Author's License & Collecting Society Limited)는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에서의 2차적 권리(secondary rights)를 관리한다. ALCS가 관리하는 주요한 “2차적” 권리에는 복사권(reprographic right), 케이블 재송신권(cable retransmission right), 공테이프 사적복제보상금(blank tape levies), 교육기관의 유선방송 녹음권(educational off-air recording right) 및 독일의 공중대여권(German public lending right) 등이 있다.¹⁴⁾

BECS(British Equity Collecting Society Limited)는 “실연자의 보상금(performers' remuneration)”을 관리하고 수집하고 배분하는 주요한 기관으로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BECS의 정의에 의하면 “실연자의 보상금”이란 음반 또는 영화의 대여권의 실행 또는 대여권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권리, 공테이프 사적복제보상금(blank tape levy) 또는 기타 복제 매체나 장치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 실연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케이블 재송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금을 말한다.¹⁵⁾

Compact Collections Limited는 영화 및 TV 제작자를 위하여 케이블 재송신권, 사적복제권(private copying right), 교육기관의 유선방송 녹음권 등을 관리한다.¹⁶⁾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Limited)는 영국에 있는 저작자와 출판업자의 복사권(reprographic copyright) 관련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CLA 규약(Article of Association)은 CLA가 발행된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의 복제를 라이선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CLA는 그들에게 위탁된 권리의 실행에 관하여 이용자와 사용조건을 협상하고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하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¹⁷⁾

DACS(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Limited)의 목적은 미술가 및 디자이너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복사권(reprographic

14) ALC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alcs.co.uk> .

15) BECS에 대하여는 <http://www.equity.org.uk/bees.htm> 참조.

16) Compact Collections Limited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compactcollections.com> .

17) 책의 복제에 관한 사용료는 Publishers Licensing Society Limited 와 ALCS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된다. CLA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cla.co.uk> .

right), 교육기관의 유선방송 녹음권, 위성 및 케이블 재송신권 등의 2차적 권리를 관리한다.¹⁸⁾

DPRS(Directors and Producers Right Society Limited)는 개별적인 영화 및 TV 감독 및 제작자를 대표하여 케이블 재송신권, 사적 복제권 및 비디오 대여권 등을 관리한다.¹⁹⁾

ERA(Educational Recording Agency Limited)는 교육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녹음과 관련한 권리를 관리한다. 1988년 법 제35조는 교육기관 및 그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개인이 케이블 또는 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녹음을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²⁰⁾ 그러나 이 규정은 실시중인 공인(certified) 라이선싱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1990년 5월 30일에 ERA(Educational Recording Agency Limited)가 실시하는 공인 라이선싱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정책은 BBC, ITA 및 Channel Four를 포함한 ERA의 회원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에 제한된다. ERA의 라이선스는 오직 교육목적의 녹음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녹음하는 것을 승인하는 총괄적(blanket) 라이선스이다. ERA는 많은 수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umbrella organization)과 할인된 라이선스 요금을 협상할 수 있다.²¹⁾

MCPS(Mechanical-Copyright Protection Society Limited)는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계적 저작권(mechanical-Copyright)이란 음악 저작물의 복제권, 복제물의 발행권, 그리고 그와 같은 복제물을 수입하는 권리 및 이들을 승인하는 권리로 정의된다.²²⁾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 Limited)는 신문 기사의 복제를 라이선스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립되었다. 그 대상은 영국의 모든 전국적인 신문과 대부분의 큰 지역신

18) DAC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dacs.org.uk> .

19) DPR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dprs.org> .

20) CDPA 1988 제35조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의 녹음.녹화)

(1)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의 녹음.녹화물 또는 그러한 녹음. 녹화물의 복제물은,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 또는 그것에 수록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없이 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그 기관이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제작할 수 있다.

(2)이 조의 규정은, 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증명되는 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처리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이용을 위한 목적상, 또는 그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할 때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처리된다. 여기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을 말한다.

21) ERA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era.org.uk> .

22) MCP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mcps.co.uk> .

문으로 구성된다. 1998년 1월 1일 이후, 그 적용범위는 신문에 보이는 저작물의 인쇄적 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의 대부분 형태의 복사 및 신문에 보이는 어문저작물 및 미술저작물의 복사에까지 확장되었다.²³⁾

PAMRA(Performing Artist' Media Rights Association Limited)는 EC 대여권 지침(E.C. Rental and Lending Rights Directive) 제8조 제2항의 영국 내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고 관리한다. PAMRA의 회원은 녹음된 실연에 대한 보상금(recorded performance remuneration)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대리인으로 PAMRA를 지정한다. '녹음된 실연에 대한 보상금(recorded performance remuneration)'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의 공중전달 또는 방송에 대하여 (또는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에 대하여) 지불되는 법정 보상금(statutory equitable remuneration)의 실연자 몫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²⁴⁾

PRS(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는 예를 들어, 공중에 음악저작물을 실연할 권리,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킬 권리 및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행위를 승인하는 권리 등 음악저작물(musical works)의 실연권을 관리한다. PRS는 또한 음악저작물의 영화를 위한 사용권(film synchronisation right)을 관리한다. 이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 음악저작물을 녹음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²⁵⁾

PPL(Phonographic Performance Limited)은 음반의 방송권 및 공연권을 관리한다. PPL는 더빙권(dubbing rights)을 '실연권의 실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음반을 복제, 생산, 또는 제작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001년 8월 현재 모든 영국 음반회사의 85퍼센트 이상(2,800개 이상)이 회원이며, PPL의 관리대상은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음반의 95 퍼센트 이상을 구성한다. PPL은 음반의 사용자가 속하는 범주에 따른 다양한 라이선싱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BBC의 경우는 시간당 비율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나이트클럽의 총괄적 라이선스 요금은 음반 사용량과 고객수에 따른 변동비율(sliding scale)로 부과한다.²⁶⁾

VPL(Video Performance Limited)은 뮤직비디오에서의 방송권, 공연권 및 더빙권을 관리한다. 800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의 주요 음반회사들이 포함되어

23) NLA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nla.co.uk>.

24) PAMRA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ukmmf.net/aura>.

25) 1997년 2월 1일, MMC(독점 및 합병 위원회)는 PRS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점 상황이 PRS와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44개의 권고(recommend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의 대부분은 이행되었거나 이행되고 있다. PRS는 최근에 MCPS와의 제휴관계를 체결하였으나, 두 기관 간의 합병의 의도는 없다. PRS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prs.co.uk>.

26) PPL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ppluk.com>.

있다. 또한 45,000 이상의 뮤직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ALCS	어문저작물 및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표하여, 복사권, 케이블 재송신권, 유선(off-air) 녹음권, 전자권(electronic right), 사적복제 및 독일 대여권(German PLR)을 라이선스
BECS	실연자를 위하여 대여에 대한 보상 및 실연의 케이블 재송신,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을 관리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Agency International 교회에서의 찬송가의 공연을 라이선스
Compact	외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을 대표하여 케이블 재송신 및 사적 복제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
CLA	문서의 복제를 라이선스
DACS	사진 및 미술의 복제를 라이선스
ERA	교육 목적의 방송의 유선 녹음을 라이선스
DPRS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MCPS	음반의 기계적 권리 및 시청각 저작물의 동기화권(synchronisation right)을 라이선스
NLA	신문 기사의 복사복제를 라이선스
OU	The Open University 교육기관에 대한 OU 방송의 유선 녹음을 라이선스
OS	Ordnance Survey 부분적으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지도의 복제를 라이선스
PAMRA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방송을 라이선스
PRS	작곡자, 작사가 및 발행자를 대표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연권, 케이블 재송신권을 라이선스
PPL	음반제작자를 대표하여 실연권을 라이선스
PLS	어문저작물의 발행인인 회원을 대표하여 발행된 서적의 판면권(typographical arrangement)을 라이선스
VPL	비디오 제작자를 대표하여 실연권을 라이선스

[출처: Heather Rosenblatt, "Copyright Assignments : Rights and Wrongs - the collecting societies' perspective,"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2000.2), p.199]

2. DPRS 및 Compact Collections Limited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및 DVD 감상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7) 이에 대한 참고를 위하여, 관련된 영국 저작권단체인 DPRS 및 Compact

27) "비디오·DVD방서 저작권료 징수", 전자신문 2004. 7. 21. (이에 따르면 한국영상협회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극장 상영작은 편당 1만 6500원, 비상영작은 편당 1만 1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Collections Limited에 대하여 그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DPRS (Directors' & Producers' Rights Society)

DPRS는 영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을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이들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DPRS는 또한 영국 및 외국에서 감독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감독의 고용계약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DGGB (Directors' Guild of Great Britain) 및 BECTU (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2,500이 넘는 영화 및 텔레비전의 감독들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DPRS는 비영리 단체로서 저작물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사용료를 징수·배분하기 위한 전문가와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보상금을 징수하는 외에도 감독 단체와 연합으로 프리랜스 감독의 고용계약에 있어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DPRS는 모든 영국의 방송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유럽 여러 나라의 자매기관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영상작가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udiovisual Authors)와 작가 및 작곡가 연합(The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의 회원기관이다. DPRS는 유럽 및 기타 외국의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수입(DPRS foreign collection)과, 2001년에 체결한 권리 계약의 결과로 영국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수입(DPRS UK collections)을 관리한다.

DPRS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판매될 경우 감독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국 방송국으로부터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개별 감독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DPRS에 등록하여야 한다. DPRS는 60개가 넘는 유럽의 채널을 통한 송신을 모니터하여 회원의 저작물이 재생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으로 감독들이 계약에서 보다 향상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초의 등록비로 £75를 받으며, 추가적으로 외국에서의 징수에 대해서는 15%, 영국내의 징수에 대해서는 10%의 관리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우선 영국 내에서의 보상금 징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1년에 방송국 및 독립 제작자와 맺은 “감독의 권리협약(Directors' Rights Agreement)”에 따라서, DPRS는 프리랜스

텔레비전 감독에 대한 연간 보상금을 수령한다. DPRS는 개별 감독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요강을 마련하고 관장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UK Distribution Scheme 2003』이 제정되었다. 위 요강(scheme)은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과 개별 감독의 창작적 기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감독들에게 그들의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저작권자에게 배분되는 보상금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저작물의 형태(A) * 저작물의 길이(B) * 2차적 이용의 성질(C) * 포인트당 가치”

저작물의 형태(A)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토론프로그램, 아동용 프로그램 등 각각의 형태별로 나누어지며 일회성인지 시리즈인지에 따라 1에서 10까지의 포인트가 정해진다. 저작물의 길이(B)는 재생시간에 대하여 15분당 1포인트씩이 주어진다. 2차적 이용의 성질(C)은 2차적 송신, 반복 송신, 국내외 판매에 대하여 방영 시간대 및 판매 지역에 따라 1에서 10까지의 포인트가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비행기 또는 교도소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청중의 경우에는 10개당 1포인트가 주어진다.(참고로 최초 송신후 28일 이내의 영국 내 채널에서의 2차적 송신은 1포인트, 최초 송신후 28일 이후에 반복 송신이 주요 채널에서 피크타임에 이루어진 경우는 10포인트가 된다.)

이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0분짜리 두 개의 드라마 에피소드가, BBC1 채널에서 9시에 방영되고,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잠비아에 각각 팔린 경우이다. 먼저 BBC1 채널에서의 상영에 대한 포인트는 “6(A, 저작물 유형) * 8(B, 길이) * 10(C, 상영시간대) = 480 포인트”가 된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판매는 “6(A) * 8(B) * 7(C, 구역2에 대한 판매) = 336 포인트”가 되며, 프랑스에 대한 판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구역2에 해당하여 10까지는 추가적인 지급이 없다. 잠비아에 대한 판매는 “6(A) * 8(B) * 2(C, 구역3에 대한 판매) = 96 포인트”이다. 마지막으로 계산하게 되는 포인트당 가치는 분배 가능한 총액을 할당된 총 포인트 수로 나눈 것으로 연간을 단위로 결정된다.

본 요강은 감독이 프리랜스 계약에 따라 관계되고 그 기간이 2001년 7월 1일 이후인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또한 요강에 따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감독은 DPRS의 회원이어야 하며 “DPRS Collection Agreement for Television Productions”에 서명해야 한다. DPRS에 등록하지 않은 감독 또는 DPRS Collection Agreement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은 지급의 할당 이후 배분에 필요한 서류를 완성하는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6개

월 이내에 분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차년도의 분배를 위한 금액으로 추가된다. 지급 받을 자격이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감독의 목록은 모든 DPRS 회원에게 배포되게 된다.

다음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보상금 징수는 외국의 저작권관리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EU 국가 내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은 법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감독에게 케이블 재송신, 사적 복제, 비디오 대여 등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은 저작권관리단체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된다. DPRS는 20여개국 이상의 단체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영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을 대표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3) Compact Collections Limited

Compact Collections는 2차 및 3차 권리와 관련하여 영화 및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독립적인 대리인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후인 1994년에 Palan 음반(Palan Music Publishing) 및 Pact(Producers' Alliance for Cinema and Television)의 감독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Compact Collection은 설립된 이후에 세계 유수의 영화 및 텔레비전 회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Compact Collection은 감독을 대신하여 동시 케이블 재송신권, 공테이프 사적복제보상금권, 교육용 복제권, 대여권, 극장 수익(theatrical box office), 공연 사적복제보상금, 제작자 인용권(producer excerpt right), 음악 발행권 등을 관리한다. 이를 위하여 TV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²⁸⁾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의 표는 Compact Collection이 관리하고 있는 권리의 국가별 현황을 보여준다.²⁹⁾

28) “비디오·DVD방서 저작권료 징수”, 전자신문 2004. 7. 21. (이에 따르면 한국영상협회와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극장 상영작은 편당 1만 6500원, 비상영작은 편당 1만 1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9) Compact Collections Limited의 Compact Secondary Rights Brochure 참조 (<http://www.compactcollections.com/pdf/Compact%20Collections.pdf>).

	케이블 재송신	공테이프	교육용 복제	대여권	공 연	극장 수익
오스트레일리아	o*		o			
오스트리아	o	o				
벨기에	o	o				
캐나다	o		o*			
덴마크	o	o				
핀란드	o					
프랑스	o	o				
독일	o	o		o		
아일랜드	o					
이탈리아		o*				
일본		o*				
리히텐슈타인	o					
룩셈부르크	o					
네덜란드	o	o				
뉴질랜드			o			
노르웨이	o					
남아메리카	o*					
스페인	o	o			o	o
스웨덴	o	o				
스위스	o	o	o			
미국	o					

* 배분 정책이 곧 확정될 계획임 (Distribution policy to be finalized soon)

IV. 결 론

이상에서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연혁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규제와 여러 장치들을 검토해보았다. 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관련 법제의 특징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심판소와 독점 및 합병위원회(MMC) 통한 다양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수수료의 과율 또는 금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업무에 관한 보고의무를 지우는 한편,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다만,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주무부처

의 관리와 감독이라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영국에서는 라이선스 요강이나 라이선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 저작권심판소에 회부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이용자의 회부와 신청에 의하여 라이선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화로 인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등장과 함께 복잡하고 다양해진 저작권 라이선스 관련 문제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영국의 저작권심판소와는 법적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그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 정책과 관련한 콘텐츠 사업자 및 일반이용자 간의 이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국에서는 MMC를 통해서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8월에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동 지침은 저작물이용허락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³¹⁾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약관상의 불공정조항과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하여 의결한 바도 있다.³²⁾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라이선스와 관련한 문제는 그 독점적 성격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특유한 제도적 필요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결론의 도출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일원적인 규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 : 영국, 저작권위탁관리단체, 저작권심판소, 라이선스

30) 저작권법 제78조 - 제80조의2 참조.

31)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00. 8. 30), 제4조 및 제3조.

3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약) 제2002-108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2조기0754(2002. 7. 25.);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2-159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 활동 제한행위 및 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2002조기0758 (2002. 7. 31.) 등.

〈참 고 문 헌〉

Copinger and Skone James on Copyright, 14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99).

Diets, Adolf, "Legal Regula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Law)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Summer, 2002.

Lui, Emily, "The Eurovision Song Contest : a Proposal for Reconciling the National Regulation of Music Collecting Societies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Ent. L. R. 2003.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Collective Licensing, A report on certain practices on the Collective Licensing of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rights on Sound Recordings, Cm.530 HMSO (1988).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Performing Right-A report on the supply in the United Kingdom of the services of administering performing rights and film synchronisation rights, Cm.3147. London, HMSO (1996).

Rosenblatt, Heather, "Copyright Assignments : Rights and Wrongs - the collecting societies' perspective," Intellectual Property Quarterly (2000.2).

〈참고 사이트〉

ALCS <http://www.alcs.co.uk>.

BECS <http://www.equity.org.uk/bees.htm>

Compact Collections Limited <http://www.compactcollections.com>.

CLA <http://www.cla.co.uk>.

DACS <http://www.dacs.org.uk>.

DPRS <http://www.dprs.org>.

ERA <http://www.era.org.uk>.

MCPS <http://www.mcps.co.uk>.

NLA <http://www.nla.co.uk>.

PAMRA <http://www.ukmmf.net/aura>.

PPL <http://www.ppluk.com>.

PRS <http://www.prs.co.uk>.

Abstract

**A Study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Prof. Deok-Young PARK

Copyright confers exclusive rights which are vested in the copyright owner and give him the right to forbid others to exploit the work without authorization. Ideally these rights are exercised on an individual basis by agreement between the copyright owner and the individual user of the work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rights continue to be exercised individually.

There are, however, certain rights which a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exercise individually and in respect of which rights owners have for many years banded together to exercise rights on a collective basis. Control over the operations of collecting societies is exercised in a variety of ways. Regulatory bodies, organizations, companies which have a monopoly in the market come under scrutiny at some point.

Each country has its own collecting society system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By looking at various kinds of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those examples of British systems would be helpful to develop Korean collecting society systems in modern Korean Copyright Act.

 Keywords

UK, collecting societies, Copyright Tribunal, licensing